

[2012.2.21] [

261 , 2012.2.21,]

() 02 - 500 - 2080~2081

1 () 「 」

2 () 「 」 (" ") 5 3 3 " "

- 1. 25 1 (" ")
- 2. 32 1 .

3. 41 ()

4. 「 」 2 3 .

5. 「 」 2 (職)

6. 「 」 2 (職)

7. .

3 (.) 7 4 . 1

4 () 8 1 3 " "

1. .

2. 가 " "

1. .

2. 23

3. 가 " " 「

」 8 2 4 " "

1. .

2. . .

5 () 9 1 " "

(業)

6 () 10 1 " "

1. 가 ,
2. (電殺法), (打撃法), (銃撃法), (刺撃法)

7 () 12 1 .

1. (島嶼), (奥地), (僻地)
 2. 10 .
- [: 2013.1.1] 7

8 () 12 1

1 (" . ") . (. . .) .
 」 36 1 . . . 「
 1 . . 2
 (" ") 2
 (") , 「 」 (" ") 7 1
 (" ") . . .
 3
 」 36 1 ,

- [: 2012.7.1] 8 1
 [: 2013.1.1] 8

9 () 12 2 " "

- 1.
- 2.
- 3.
- 4.
5. ,
6. 1 1 가, 2 6 가
 30 1 () 가
 . . . 「 」 36 1
 . (가)

- 1.
- 2.
- 3.

2 . . 2
 , . .
 1 2 「 」 16 1 가
 . . , . .
 1 3 . 4 5
 .
 2 . .
 1 , 1 1 5 가
 .
 2 . .
 1 .
 1 6 8 1 2 .
 7 . 가 1 1
 5 . .

[: 2013.1.1] 9

10 () 12 4

1. 「 」 17
2. 「 」 4
3. 「 」 32
4. 33 1
5. 15

(가)

11 () 13 1

- 1.
- 2.
3. ()

12 () 13 2

(危害)

3 (猛犬)

1

3

13 () 14 1 " "

가

가

(中性化)

(放飼)

가

1

14 () . . (" . ")
14 2
3

15 () 15 1 3 " " 4
15 4 4
. 가
1. 4
2. .
3. .
4. . ()
5.
2 . 4 가 .
. 5
. 1 19 2

16 () 15 5
. 1

17 () 15 8 "
" 가 2
15 8 (" ")

- 1.
- 2.
- 3.

18 (.) 1 3 10

(互選) ,

가

1. 「 」 2 1
2. 4 3
3. 41

4.

1

1. 2 1
2. 2 2 3

가

2

1

3

1 5

19 () 15 9

5

20 () 7 1

6

7 2

7

8

21 () 19 2

9

1

7

가

7

가 2

가

「

」 3 1

19 1 2

22 () 22 1 "

"

1.

가

2.

가

가

3. 21

가

23 () 24

"

가

"

1. (人獸共通傳染病)

2. (防疫)

3. (種) ,

1

(

" ") ,

24

24 () 25 2

1. 3

2.

25 2

25 () 12 6
(" ") 10
() .

26 () 27 2 1 " "

1. 「 」 23

2. 4 1

3. 2 2 4
27 2 2 " "

1. 5 1

2. 5 「 」 2 .

3. 「 」 6 가 9

4. 1

27 2 3 " "

1.

2. 「 」 2 . .

3.
2 2 2 2 4
2 2 4 .

27 () 4 3

27 2 2 .

1

1

2 27 2 1 3
27 4 , ,

3

30 .

28 () 27 4 가

1. 3 .

2. .

3. 100 3

4.

5.

29 () 29 1 " , , , , .

30 () 29 1 6 .

31 () 29 2 11 .

1. 「 」 1

2. 1

32 () 31

3 , 6 12

13

1 가 가 가 .

1 7 .

33 () 29 7

1 8 .

34 () 31 1

14

30

1. 「 」 29 1

2. 1

3. 1

1

(受理)

12

35 () 32 1 "

" 가 (伴侶)

32 1

9 .

36 () 32 2

1. : .

2. : 35 1

3. : 35 1 ,

4. : 35 1 ,

37 () 33 1 ,

15

() (

)

1.

2.

3. ()

4. 「 」 29 2 1 (「 」 36 1)

1. ()

2.

1 33 3 1 4

1 9 16

17 () 18

1 가

19 () ()

4 가 가 가

38 () 33 2 " "

1. (가)

2.

3.

4.

33 2

20 37 1 3 4

1.

2. ()

2 37 4 6

39 () 33 2 () ()

21

40 () 34 1 22 ()

1.

2.

1 . . 「 」 36 1
 . ()
 . . 1 34 3 1
 1 2
 . . 1 가 9 23
 , 24 ()
 1 가
 19 () () . .
 4 () 가 가 가

41 () 34 2 " "

1. (가)
- 2.
- 3.
- 4.

34 2 20 ()
 가 40 1 ()

- 1.
2. ()
- 34 2 39
- 1 40 4 6

42 () 35 25

1. . . ()
2. : 「가 」 15 1 가

3. 1 2 : 「 」 36 1
 1 . . , , , ,

. . 1 33 3 1 . 4 34 3 1
 1
 1 가 37 1 2 40 1 2

43 () 36
10

44 () 37 1

1. , : 1 3

2. 38 : 6 3

1 (

" ") ,

1. 「 」 23

2. 5

3.

1.

2. •

3. •

4.

5.

1

30

• •

4

• •

• •

2

45 () 38

11

• • 1

26

2

가 가

가

46 () 39 1 3 "

"

1.

2.

3. • •

4.

47 () 40 3

27

48 () 42

12

1 ()

2012 7 1

, 7 · 8 · 9

2013 1 1

2 ()

16

3 ()

6

35

37

4 ()

44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뒤쪽)

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수수료	
		신규 ·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 시)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2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1만5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1만원	무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 | | | |
|--|----------|-----------|
|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2. 유기 · 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 소유자
 -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제8조제2항 관련)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가. 검역검사본부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 다. 검역검사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분량의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부여한다.
- 라.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2.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규격

- 가.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 1) 구성: 총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 2) 표시

코드종류	기관코드 (5-9비트)	국가코드 (17-26비트)	개체식별코드 (27-64비트)
KS C ISO 11784	1	410	12자리

- 가) 기관코드(1자리): 농림수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 나) 국가코드(3자리):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 다) 개체식별코드(12자리): 검역검사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 나.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앞쪽)

동물등록증		
동물등록번호 :		
소유자 정보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동물의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0/X
속종:	품종:	털색:
생년월(일):	기타특징: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과인		

100mm × 60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내용		일자/확인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확인서명)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 2007)에
따를 것

2) 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9조
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할 것

다. 인식표는 가목의 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하되,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
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무선식별장치의 주입 또는 부착방법

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하며, 주입
위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는 해당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 체계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위탁 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구조·치료 대상 동물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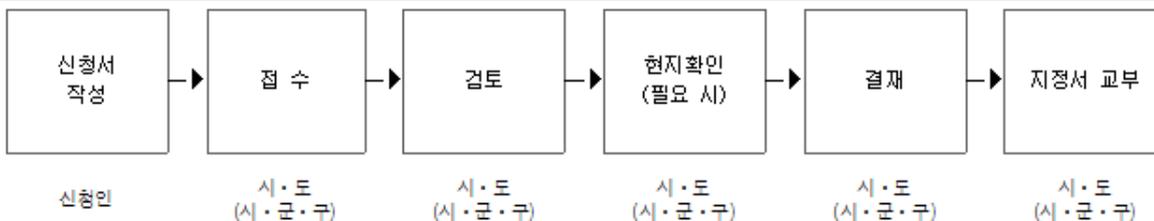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의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 동물의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 동물의 구조·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자할용품)]

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
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
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
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

1. 일반사항

-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사항

-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번호 제 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치료대상 동물

유효기간

지정조건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라.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가. 사육시설 및 환경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등록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의무

-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급이(給餌),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관리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주관하거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원격 교육도 포함한다)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농장에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4) 관리자는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고 번호 제 호

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동물의 정보

속종		보호동물사진 (5X60cm)
품종		
털색		
성별	암 / 수 / 미상	
중성화 여부	예 / 아니오 / 미상	
특징		

2. 구조 정보

구조일	
구조사유	
구조장소	
공고기간	

3.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보호센터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다. 가축의 입식 및 관리

- 1)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생산용·알 생산용 동물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을 입식할 수 있다)에 한하여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 2)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한다.
- 3)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 4) 질병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3. 축종별 개별기준

축종별 인증 기준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제32조제3항 관련)

1. 검역검사본부장은 제32조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서류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2. 검역검사본부장은 '서류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장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농장을 방문하여 동물의 관리방법, 사육 시설 및 환경, 동물의 상태 점검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증평가 관련 자료 및 사진 등과 함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받은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제30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6.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인증심사원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은 인증신청인과 관련된 자료와 심사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호동물 기체관리카드

1. 관리번호					
2. 구조정보	신고일		구조일		
	신고자		주소(전화번호)		
	구조자		구조장소		
	기타				
3. 동물정보	속종	품종	성별	알 / 수 / 미상	
	나이	증상화	O / X / 미상	체중	
	특징				
4. 보호동물 사진					
보호동물 사진1(3X4C _m)		보호동물 사진2(3X4C _m)		보호동물 사진3(3X4C _m)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담당자	내용			
6. 처리결과					
처리일	처리결과	내용			비고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반환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기증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폐사 <input type="checkbox"/> 안락사	사유		확인자	
	<input type="checkbox"/> 방사	방사장소		확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7. 기타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표 8]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

1.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농장에 표시하려는 자는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80cm, 세로 60cm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가. 농장명: 가로 및 세로 10cm(청색)
 - 나. 인증번호 제 호: 5cm(검정색)
 -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cm(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씨는 흰색)
 - 라. 농림수산식품부 및 심벌: 10cm(청색)
 3. 바탕색: 흰색
 4. 심벌의 받침 반 타원: 회색
 5. 간판 및 글씨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 같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려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인

보호동물 관리대장

연번	신고내역				구조내역			개체정보						보호내역		
	신고일	신고자	주소	전화번호	구조일	장소	구조자	축종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처치 및 치료	기타
1																
2																
3																
4																
5																
6																
7																
8																
9																
10																

증번호, 축종, 농장소재지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

가. 표시 도형



나. 작도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작도법에 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4.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종별 인증기준에서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공통 기준

-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판매, 생산, 수입하려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 설치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4)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 5) 쥐나 유해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7) 개와 고양이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

- 1)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사육할 수 있는 설비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 가) 가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배
 - 나) 세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1.5배
 - 다) 높이: 뒷발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높이
- 2) 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및 배수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설비의 경우 철망의 간격은 사육하는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 4)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별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비용징수통지서 (O차)

비용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 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 첨	

「동물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보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및 「동물보호법」 제20조제3호에 따라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시·군·구)로 귀속됩니다. 2. 「동물보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야 한다.

5)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격리실

1)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2)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화장장은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바.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사. 등록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 1) 개·고양이: 2개월 이상
 -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 자. 동물판매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년) 통보서

(앞쪽)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동물실험 시행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등록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동물보호법」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1. 위원 현황 (총 명)

성명	연령(세)	전문분야	소속

2. 위원회 개최 횟수 (회)

3. 위원회의 동물실험 실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필요조치 요구 내용을 포함)
-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 다.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4.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승인

심사 건수	승인 건수	변경 승인 건수	미승인 건수

210mm×694mm[보존용지(2종) 70g/㎡(저활용종)]

-
-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시 해당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 등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타.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관련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파. 동물생산업자는 사육·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카드에 번식자 및 출산날짜, 출산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나.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 사용량

(단위: 마리)

동물 종		정도	Grade A	Grade B	Grade C	Grade D	Grade E	합계 (C+D+E)	종별 총계 (B+C+D+E)
설치류	마우스								
	랫드								
	기니피그								
	햄스터류								
	기타 설치류								
토끼									
원숭이류	원숭이류 (영장류)								
	원숭이류 (비영장류)								
포유류	개								
	고양이								
	미니피그								
	돼지								
	소								
	염소								
	기타 포유동물								
조류	조류(닭)								
	기타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기타 척추동물									
기타									
총계									

Grade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Grade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을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Grade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Grade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

Grade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유의 사항

- ① 항목 1. 의 전문분야의 경우, 수의사, 동물보호전문가, 기타 전문가(세부영역)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② 항목 3. 의 경우, 가에서 다까지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소수 의견과 미승인 사유를 포함한다)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가중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고의 수리취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6.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 1)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 2만원(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행수수료 8천원을 포함한다)
-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만5천원(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행수수료 3천원을 포함한다)
- 3)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행수수료 3천원을 포함한다. 다만,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가. 신청비: 1건당 10만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영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 1만원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다. 등록사항 및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1만원

라. 등록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5천원

인증 번호 제 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농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인증구분	축종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 / 부		
농장 소재지			
사육시설	동	m ²	
사육규모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연번	인증 연월일	인증번호	축종	농장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의 명세 3. 사업계획서(등록장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등록장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행정정보 공통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통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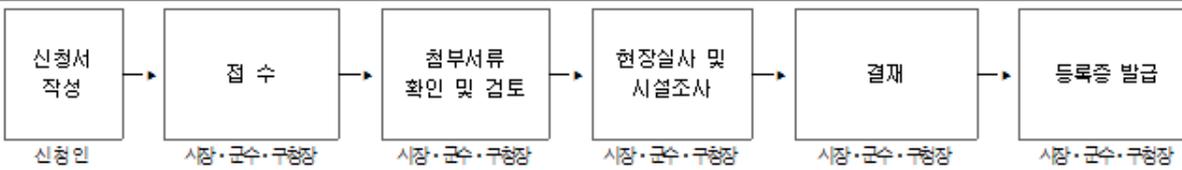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만의 등록장묘업, 등록판매업, 등록수입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 "란에 를 표시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에 모두에 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등록번호 제 호

등록증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영업의 종류	
등록조건	

「등록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 등록장요업 으로
[] 등록판매업
[] 등록수입업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	면적	장례식장	m ² 화장장	m ² 납골시설	m ²
	확장부		규격(수량)		
종업원 수			명		

4.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분 연 월 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210mm×694mm [보존용지(2종) 70g/㎡(저활용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면적	사육실	m ²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	
	격리실		취급 동물의 종류		
종업원수		명			

4.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분 연 월 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210mm×694mm[보존용지(2종) 70g/㎡(자할용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록증
[]동물생산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동물장묘업 <input type="checkbox"/> 동물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수입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생산업		
재발급 사유				
등록증 (신고 확인증) 분실사유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등록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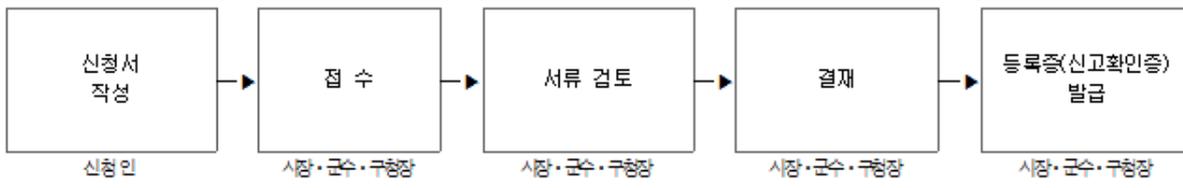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수수료 5천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비항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신고)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사유	
등록증(신고확인증) 분실사유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등록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영업장 명칭 또는 상훈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수수료 1만원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인력의 명세서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동물장요업 등록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남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업종	<input type="checkbox"/> 동물장묘업 <input type="checkbox"/> 동물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수입업 <input type="checkbox"/> 동물수입업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사육·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보관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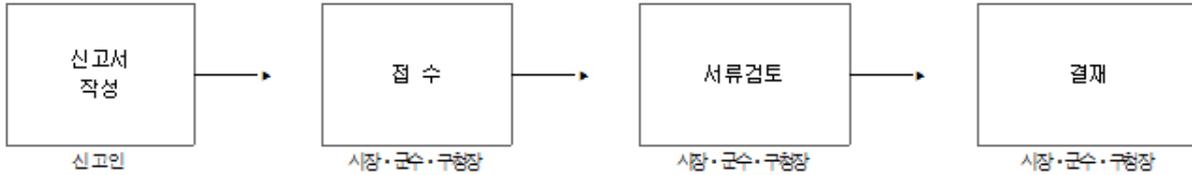
(뒤쪽)

합부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사육·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뒤쪽)

합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의 명세서	수수료 1만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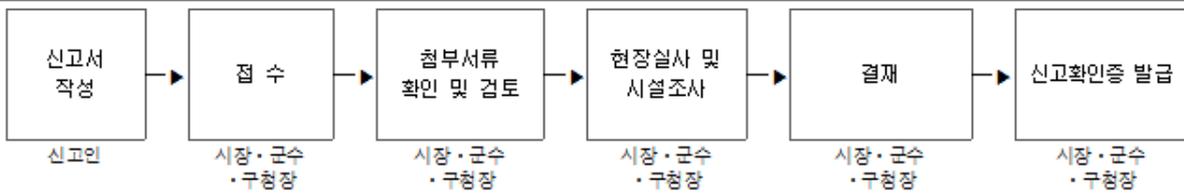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동물생산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동물생산업 신고(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동물생산업	영업의 내용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면적	사육실	m ²	건물 소유 구분	[]자가 []임대	
	격리실		취급 동물의 종류		
종업원수		명			

4.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분 연 월 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

6. 비고

210mm×694mm[보존용지(2종) 70g/㎡(저활용종)]

(뒤 쪽)

구분	영업양도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수수료
첨부서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칸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 양도·양수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상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칸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 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물보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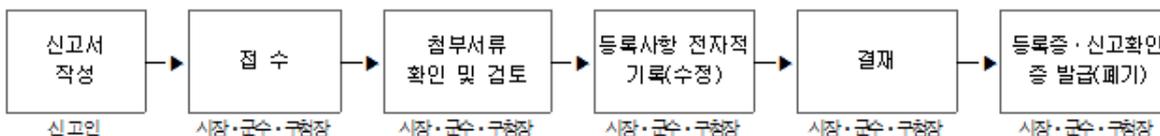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 동물판매업).

처리절차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연번	문서번호 (발송일)	영업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대표자 (영업자)	위반사항	청문일	처분기
1							
2							
3							
4							
5							
6							
7							
8							
9							
10							

(앞 쪽)

제 호

동물보호감시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8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 × 90mm [보존용지(1종) 120g/m²]

(색상: 연노란색)

(뒤 쪽)

동물보호감시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40조제1
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과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출입·검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
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법인(조직, 농장) 명		조직원(고용인) 수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의 구분	축종 :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농장 소재지			
	사육시설	동	m ²	
	사육규모			

2. 심사결과

항목	평가	
	점수	부적합 항목 수
① 일반기준		
② 동물의 관리 방법		
③ 사육시설 및 환경		
④ 동물의 상태		
⑤ 실외 방목장 시설(추가사항)		
합계		

3. 심사의견

붙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자료 각 1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694mm[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개체관리카드

※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1. 관리번호						
2. 개체정보	속종		품종		성별	암 / 수
	생년월일		부		모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거래기록	구입(수입)일		구입(수입)처	(연락처)		
	판매일		판매처	(연락처)		
4. 번식기록(번식용 동물에 한함)						
일자		내용		비고(산자수 등)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6. 기타						

210mm×297mm(보편용지 120g/㎡)